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9일, 조계원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계원의원)

현행법은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역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 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가 없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계약 해지 사유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등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침해행위가 계약해지사유임을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제2항).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에게 재정 지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직장운동경기부선수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5항·제6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 ----- ----- ----- <u>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이하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이라 한다)</u> 이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u>직장운동경기부 선수</u> 와	② ----- ----- <u>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u>

[연도별 선수 표준계약서 이행률]

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 (단위: 개)			표준계약서 이행률 (B/A)
	점검 단체 수 (전체 단체 수)	조사 참여 단체 수(A)	표준계약서 준수 단체 수(B)	
2022년	328	237	96	40.5%
2023년	326	273	117	42.9%
2024년	320	287	144	5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없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렵고 재계약이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 등과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인권침해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임을 명시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에게 재정 지원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직장운동경기부선수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선수의 인권침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국가 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표준계약서 이행율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기도는 2023년 ‘선수 및 지도자’에 해당하는 ‘단원’이 성희롱·성폭력범죄 또는 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안 제10조의3제2항의 ‘인권침해’·‘스포츠비리’라는 용어는 불분명하므로 조문을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동조 제6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의 원칙이므로 개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참고로, 제22대 국회에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계약해지사유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6호,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음.

[제22대 국회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제10조의3	현행	박덕흠의원안	조계원의의원안
(제1항)	선수-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	<u>선수 또는 체육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간</u>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	<u>선수 및 체육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 간</u>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
(제2항)	계약 시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포함(직장운동경기부)		
	-	<u>선수 대상 체육지도자의</u> <u>인권침해행위</u> 가 계약해지사유임을 명시	<u>인권침해행위</u> 가 계약해지사유임을 명시
(제5항)	-	-	<u>표준계약서 사용 시</u> <u>국가 재정 지원 우대 가능</u>
(제6항)	-	-	<u>표준계약서 제·개정 시</u> <u>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청취</u>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제21대 국회에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등(선수·감독·코치)’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415, 이용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